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개방형직위(사무국장) 채용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5. 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직급	인원	업무내용
사무국장 (개방형직위)	1급	1명	기획·예산·회계, 인사·보수, 성과관리 및 정보화 운영 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국 업무 총괄

2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자격기준)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사람

직급	채용자격기준
1급 사무국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4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1급직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2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4년제 정규대학의 정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거나 또는 공인 회계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17년 이상 재직한 사람 9.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채용자격기준 해당여부는 응시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서류심사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며, 자격 미달자는 면접 또는 임용을 취소함

3

근로조건

- 채용직위 : 개방형직위 사무국장(1급)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성과에 따라 1년 연임 가능, 정년 적용)
- 급여수준 : 우리 원 보수규정에 의함
- 근무장소 : 본원(서울시 중구 소재)

4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심사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5. 25.(목) ~ 6. 8.(목) 18:00 까지 (15일간)
 -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k-medi.recruiter.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폐쇄,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서류심사
 - 응시지원서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직위 적합성 등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 '23. 6. 20.(화)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심사 실시
 - 면접심사(예정)일 : '23. 6. 21.(수) ~ 6. 23.(금) 중 1일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 ~ '23. 6. 27.(화)
- 임용(예정)일 : '23. 7. 1.(토)

※ 상기 서류·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및 임용 예정일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응시지원서 작성 전 **증명서류 사전준비 필수**, **유효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채용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서 경력사항 작성 시 유효한 경력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발급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재하고 증명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경험사항에 기재 가능

□ **증명서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채용시스템에 업로드)**

◀공통서류▶

- 증명사진(JPG파일,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
- 경력증명서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가급적 관련 수행업무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이력 확인용)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 * 간호사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신고증' 추가 제출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 1) 법학, 보건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채용자격기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대상자
 * 분교의 경우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추가제출
-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확인서 (※ 모든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 및 제출)
-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필요시 서류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임용예정일 기준 경력·자격요건 미달, 고용형태, 가점여부 착오기재 등)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자료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6

가산점

가산점 부여대상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산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 경우 (알리오기준)
- (청년인턴) 2014.7.1. 이후 우리 원에 입사한 청년인턴 중 성적 우수자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지원한 경우에 한함

7

기타사항

- 응시원서와 증명서류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만을 유효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 시 연봉에 반영, 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입사 후 최초 경력 산정 및 경력 재확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단, 군경력 제외).
 - 근무경력, 기간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 시 4대 보험 자격 득실(2종 이상) 및 소득금액 증명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채용시스템에서 지원자가 “최종지원” 을 한 경우 “지원취소” 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 후에라도 지원서 허위·착오기재(고용형태, 임용 예정일 기준 경력·자격요건 미달, 가점여부 착오기입), 부정 행위자, 신체검사 부적합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부정한 행위 또는 인사채용 비위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 된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우리 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일 이전에 면직처리가 되어야 하고, 재직 중에는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및 당사자의 자발적 제출의 경우는 제외되며 서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관련 문의>

- 인사담당자 : ☎ 02-6210-0172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시~12시, 13시~18시)